

영주시 공고 제2022 - 1020호

「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 8월 16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
- 인용조문을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
- 기능직·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삭제하고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기능직·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’을 삭제하고 ‘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’을 추가 (안 제2조제1항제1호, 제4조제1항2호)
- ‘결손처분’를 ‘정리보류’로, ‘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’를 ‘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’로 변경 (안 제2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주 소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411, Fax(054)639-638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결손처분”을 “정리보류”로, “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“계약직 공무원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)”를 “공무직근로자(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생 략)</p> <p>1. 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‘체납액’ 이라 한다)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<u>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②. (생 략)</p> <p>1. 영주시 체납액을 납부 독려, 체납처분,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, 관허사업 제한, 체납 또는 <u>결손처분</u> 자료 제공,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, 「<u>국세징수법</u>」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</p> | 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 <u>공무원 및 공무원근로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정리보류</u> ----- -----, 「<u>지방세징수법</u>」 제8조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4조(지급한도) ①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. 단, 제2조제1항제1호의 <u>계약직 공무원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)</u>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.</p> | <p>제4조(지급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공무원근로자(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.</p> |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| | |
|-------|---|
| 자치법규명 | |
| 검토사항 | |
| 주요내용 | 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 |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|
| 의견 제출자 | 소속 또는 주소 | | 연락처 | |
| | 성명 | (서명 또는 날인) | | |